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환 경 영 향 평 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2026.

아이파크마리나(주)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93번지 일원
- 면 적 : 228,496㎡ (육상부 136,241.8㎡, 해상부 92,254.2㎡)
- 사업시행자 : 아이파크마리나㈜
- 승인기관 : 부산광역시
- 사업추진방식 :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 / 운영기간 30년



【 위치도 】

○ 사업내용

1) 육상부

구 분		내 용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용 도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대지면적	계	228,496.00㎡
	육상부	136,241.80㎡
	해상부	92,254.20㎡
건축면적		62,221.77㎡
총 연면적		64,710.52㎡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63,736.69㎡
건폐율		45.67% (법정 60% 이하)
용적률		46.78% (법정 1,000% 이하)
공개공지		14,098.63㎡ (법정 10% 이상)
규 모		지상 1~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기 타		• 계류척수 : 567척 (해상계류 : 317척, 육상 : 250척)

주) 사업계획은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해상부

구 분		내 용
동방파제 연장(L=73m) 및 중앙방파제 제거(L=30m)	구조형식	T.T.P피복 사석식 경사제
	마루높이	DL.(+) 6.10m
	주피복재	T.T.P(간부 16톤급, 두부 20톤급) 설치
	사면경사	1 : 1.5
슬립웨이 (동측 40m, 서측 50m) 제거 및 보강	구조형식	소파블록식 직립제
	마루높이	DL.(+) 3.00m
	주피복재	피복석(0.1m3/EA급) 1열 설치
	사면경사	1 : 1.5
마루높이 보강		동·중앙·서방파제 상치증고, 동·서 방파호안 상치증고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본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40조,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평가대상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음.

2.1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가. 공고일

○ 2025년 6월 5일

나. 공고방법

- 일간신문 게재 : 전국보급신문(한겨레), 지역신문(국제신문)
- 정보통신망 게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홈페이지 (<https://www.haeundae.go.kr>)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환경보호(환경영향평가)] (<https://www.busan.go.kr>)

다.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5년 6월 5일 ~ 7월 4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21일간)
- 공람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위생과, 해운대구 우3동 행정복지센터

라.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2025년 6월 5일 ~ 7월 11일(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제출방법 : 해운대구 홈페이지 및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

▶ 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간신문 공고

18 전국

2025년 6월5일 목요일 한겨레

윤 정부서 재개발사업 조건 완화 성남 단독주택지 주민 갈등 키워

방주인 동의를 75~50% 조정
1기 세도시 특별법 관련 조항
시, 전국서 단독주택 첫 적용
반대세입자를 쫓겨날라 불만 열어
"권한 가진 시가 문제 풀어야"

"동네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집들을 다 부수고 새로 짓겠다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433호에 사는 정정혜(48)씨가 들었다. 장씨는 최근 수433호 재개발 반대 모임에서 활동하며 주민들로부터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자칫하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곳에 있는 분당동 주민들이 마천까지 심정으로 재개발 반대 서명을 받은 지 약 1주일 만에 100여명의 서명을 모아 최근 성남시에 전달했다.

수433호와 분당동은 분당구역 및 안 푸는 단독주택 단지다. 그런데 최근 이들 지역을 아파트 등으로 재개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앞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던 1기 세도시 선도지구 사업에서 빠져있지만, 성남시가 주민 동의(50% 이상)가 있는 단독주택 단지에 대해 특별법(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들어섰다.

재개발 사업 추진이 이뤄지면 주민 갈등도 커지고 있다. 단독주택 단지의 이들을 동네는 아파트와 달리 가구별로 입장 차이가 크다. 건물 연한만 해도 짧은 경우는 지는 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433호 단독주택 단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정도로 제각각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 터를 잡은 고령층이 많아 재개발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이 동네에서 평생 살 생각으로 터를 잡았는데, 일평생 집을 부수고 쫓겨나다는 게 말이 되느냐' 83살 강춘자씨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주민들은 성남시가 1기 세도시 특별법 관련 조항을 단독주택 단지에 적용할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 소유자 75% 이상(토지 면적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윤 정부가 2024년 8월 시행한 '노후주택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군·구 관으로 과반수(50%) 동의만으로도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했다. 성남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이 조항을 단독주택에 적용했다.

성남시는 법률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1기 세도시 특별법이 갈등의 씨앗이 된 것은 맞다"면서도 "시 입장에서선 찬성이나 반대 쪽 어느 편을 들 수 없고 법적으로 (재개발을 위해서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물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씨는 "일평생 법까지 바꾸면서 전 정권이 판을 깔고 성남시가 개발업자들에게 단독주택 단지를 내준 것"이라며 "조용히 잘 살고 있던 동네 어르신들에게 재개발을 막으려면 반대 운동을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법적 권한을 가진 시에서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글 사진 이희희 기자 givenhepp@han.co.kr

김문수 후보가 호남서 1등한 단 한 곳은?

한센인 거주 전남 고흥 속목도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와 안인

대선에서 '내란 종식'을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 호남 지역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유일하게 득표율이 앞선 곳은 전남 고흥 속목도 투표소 나았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집계를 보면, 광주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84.77%, 김문수 후보는 8.02%였다. 전남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85.87%, 김문수 후보 8.54%로 집계됐다. 전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82.65%, 김문수 후보 10.00%였다.

호남 지역 투표소는 광주 357곳, 전남 806곳, 전북 366곳 등 1729곳이다. 이 가운데 호남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투표

소는 전남 고흥군 도양읍 국립속목도병원에 설치된 제4투표소다. 이 투표소에서 총투표수 235표 중 김문수 후보가 118표(50.21%)를 얻어 이재명 후보 108표(45.94%)를 앞섰다.

한센인들이 거주하는 속목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의 연인 때문에 보수적 색채가 비교적 강한 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0년대 속목도에 병원 건물이 들어섰고, 이때 한센인이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게 한 경제 철조망(2m)도 제거됐다. 특히 그 육영수 여사는 속목도 병원을 방문한 한센인 환자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며 봉사활동을 했고, 이후 한센인들을 초청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계현 여사는 지난달 27일 고흥 속목도를 찾아 한센인들을 만나 위로한 바 있다.

정지하 기자 dshh@han.co.kr



지구아 이브지 마 2025 세계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대구 수성구 산천 둔지에서 동영유치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손팻말을 들어 보이기도 있다. 5일 재주 사리까지 재주국제민간선센터에서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열려는데, 한국에서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것은 1997년 이후 28년 만이다. 연합뉴스

대통령기록물 22만건 '비공개' 분류 내란 관련 민감자료까지 봉인했다

대통령기록물 '총 1365만여건 인수'
해가복 박근혜 0.04%...연세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과 이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1365만여건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인수됐다. 이 가운데 약 22만건이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되면서, 내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록이 봉인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일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서 만든 제2대 대통령기록물 1365만105건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이관받은 곳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령호지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26곳과 함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이다.

이관된 기록물은 전자기록물 약 777만건과 비전자기록물 약 587만1천건이다. 비전자기록물은 종이 문서 3만4천건, 간행물 692건, 선물·형성박물 1200건, 사창기록물 53만3천건 등으로 구성됐다. 전자기록물에는 문서 3만9천건,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663만건, 형식기록 74만건이 포함됐다. 형식기록에는 대통령실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이 포함된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공식 웹기록은 모두 3만7818건으로,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가장 많다. 이는 파면된 박근혜 전 대

령과 비교해도 0.04%에 불과하다. 기록물관리가 지나치게 적었다. 대통령실 누리집은 파면 이후 현재까지 접속할 수 없어 '은폐'는 만드어지고 있다.

전체 기록물 가운데 약 1.6%인 21만9423건은 지정기록물로 분류됐다. 비발기록물은 77만건이다. 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최대 15년 동안 봉인되며, 사생활 보호 목적일 경우에는 30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이후 교육부장관(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관련 회의록이나 법적 책임 소재가 담긴 민감한 기록을 봉인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통령기록물법상 지정기록물 목록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역대 정권은 목록을 통해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해왔다. 강성국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개재현 활동하는 '대통령 지정기록물 목록까지 지정기록물로 부수면 재해가 발생할 것은 현 대통령기록물법과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지하 기자 hyngh@han.co.kr

날씨와 생활		온 나라 읽기	
서울(기상청) 11도 맑음 14도 맑음 17도 맑음		오늘(목) 내일(금) 모레(토)	
강릉	15/27	15/27	15/26
춘천	11/25	14/28	14/26
원주	17/29	21/29	21/28
충청	14/28	16/28	16/28
전라	15/28	16/28	16/28
경상	16/25	16/25	16/24
제주	18/28	18/25	18/25
생활기상		강수량	강수량
서울	4.6	90	70
강릉	70	80	65
춘천	90	80	70
원주	90	80	70
충청	90	80	70
전라	90	80	70
경상	90	80	70
제주	90	80	70

한겨레

본실 광고

광고문의

구독신청

자율분부

1566-9595

지하철의 길소용

(재난이 아닌 일상생활을 위한)

수영만 오토경계기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1. 사업명: 수영만 오토경계기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장소: 수영만 오토경계기 재개발 사업지(수영만 오토경계기 재개발 사업지)
3. 사업규모: 수영만 오토경계기 재개발 사업지(수영만 오토경계기 재개발 사업지)
4. 사업기간: 2025.06.01 ~ 2025.12.31

1. 사업명: 수영만 오토경계기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장소: 수영만 오토경계기 재개발 사업지(수영만 오토경계기 재개발 사업지)
3. 사업규모: 수영만 오토경계기 재개발 사업지(수영만 오토경계기 재개발 사업지)
4. 사업기간: 2025.06.01 ~ 2025.12.31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토지 등에 대한 공고(1차)

우리 조합은 「토지 및 주택거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토지(이하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확인이 곤란한 토지 등에 대한 공고(1차)를 실시합니다.

1. 사업명: 수영만 오토경계기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장소: 수영만 오토경계기 재개발 사업지(수영만 오토경계기 재개발 사업지)
3. 사업규모: 수영만 오토경계기 재개발 사업지(수영만 오토경계기 재개발 사업지)
4. 사업기간: 2025.06.01 ~ 2025.12.31

▶ 정보통신망 게시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광역시

분야별 정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English

로그인

회원가입

경제

일자리·교육

사회복지

여성·가족

보건·건강

도시·건축·주택

안전

환경보호

교통·물류

해양농수산

행정

문화체육관광

환경보호 > 환경영향평가 > 게시판 > 공람/공고

공람/공고

새소식

자연

공기

물

흙

폐기물/석면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안내

사업조치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게시판

공람/공고

공지사항

심의일정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638

작성자

정경화

작성일

2025-06-05

조회수

2

첨부파일

[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문.hwp](#) (파일크기: 66 KB, 다운로드 : 1회)
 [미리보기](#)
[미리듣기](#)

[주민의견 제출서\(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1회)
 [미리보기](#)
[미리듣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 공람기간 : 2025년 6월 5일~2025년 7월 4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21일간)

- 주민설명회 개최 : 2025년 6월 24일(화) 14:00 / 아르피나 2층 대회의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5)

부산광역시

분야별 정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English

로그인

회원가입

경제

일자리·교육

사회복지

여성·가족

보건·건강

도시·건축·주택

안전

환경보호

교통·물류

해양농수산

행정

문화체육관광

환경보호 > 환경영향평가 > 사업조치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새소식

자연

공기

물

흙

폐기물/석면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안내

사업조치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조사서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게시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재협의)

부서명

환경정책과

작성일

2025-06-05

조회수

2

사업구분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접수일

20250521

완료일

진행현황

진행중

진행구분

약식평가

첨부파일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홈페이지.pdf](#) (파일크기: 28 MB, 다운로드 : 3회)
 [미리보기](#)
[미리듣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 공고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5-842호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93번지 일원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사업 개요

- 가. 사업명 :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 나.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93번지 일원
- 다. 사업규모 : 228,496㎡(육상부 136,241.8㎡, 해상부 92,254.2㎡)
- 라. 사업시행자 : 아이파크마리나(주)
- 마. 승인기관 : 부산광역시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 2025년 6월 5일 ~ 2025년 7월 4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21일간)
- 나. 공람장소 :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해운대구 우3동 행정복지센터

3. 주민설명회 개최

- 가. 일시 : 2025년 6월 24일(화) 14:00
- 나. 장소 : 아르피나 2층 대회의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5)

4. 주민의견 제출

-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25.7.11.까지)
- 나. 제출방법 : 해운대구 홈페이지 및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
- 다. 의견내용 :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5. 기타사항

환경영향평가서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요약문은 해운대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해운대구 환경위생과(☎051-749-4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 설명회 개최

- 신문공고 :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공고에 포함하여 공고 (2025년 6월 5일)
- 일 시 : 2025년 6월 24일(월) 14:00
- 장 소 : 아르피나 2층 대회의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5)
- 참석주민 : 91명 (참석인명부 기준)



【 설명회 개최 】

▶ 주민설명회 참석인명부

(1/2)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참석인명부					
계획명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설명회 일시	2025년 6월 24일(화) 14:00	설명회 장소	아르피나 2층 대회의실		
일련번호	성명	주소	서명	비고	
1	김				
2	이				
3	정				
4	김				
5	정				
6	김				
7	김				
8	이				
9	김				
10	정				
11	김				
12	정				
13	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참석인명부					
계획명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설명회 일시	2025년 6월 24일(화) 14:00	설명회 장소	아르피나 2층 대회의실		
일련번호	성명	주소	서명	비고	
14	정				
15	정				
16	정				
17	정				
18	김				
19					
20	정				
21	김				
22	정				
23	김				
24	김				
25	정				
26	정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참석인명부					
계획명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설명회 일시	2025년 6월 24일(화) 14:00	설명회 장소	아르피나 2층 대회의실		
일련번호	성명	주소	서명	비고	
27	정				
28	김				
29	정				
30	김				
31	정				
32	정				
33	김				
34	정				
35	이				
36	정				
	이				
	정				
	정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참석인명부					
계획명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설명회 일시	2025년 6월 24일(화) 14:00	설명회 장소	아르피나 2층 대회의실		
일련번호	성명	주소	서명	비고	
	정				102기-2층 6461번
	정				
	정				
	정				
	김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2/2)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참석인명부

계 획 명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설 명 회 일 시	2025년 6월 24일(화) 14:00	설 명 회 장 소	아르피나 2층 대회의실	
일련번호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이			
	김			
	남			
	도			
	안			
	박			
	박			
	최			
	권			
	신			
	최			
	황			
	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참석인명부

계 획 명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설 명 회 일 시	2025년 6월 24일(화) 14:00	설 명 회 장 소	아르피나 2층 대회의실	
일련번호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최			
	원			
	이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참석인명부

계 획 명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설 명 회 일 시	2025년 6월 24일(화) 14:00	설 명 회 장 소	아르피나 2층 대회의실	
일련번호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참석인명부

계 획 명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설 명 회 일 시	2025년 6월 24일(화) 14:00	설 명 회 장 소	아르피나 2층 대회의실	
일련번호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김			
	김			

2.3 공청회 개최

- 신문 공고 :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공고
- 2026년 5월 22일
- 일 시 : 2026년 6월 10일(수) 14:00
- 장 소 : 아르피나 8층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5)
- 참석주민 : 55명 (참석인명부 기준)



【 공청회 개최 】

- 14 -

▶ 해운대구 공고

공개

공제사항

고시공고

보도/해명

입찰공고

입법예고

분묘개장공고

무연고 사망자 공고

공영장에 부고 알림

행정서비스 헌장

구정운영

정보공개

감사

예산

계약

통계

공공데이터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해운대구 신청사를 소개합니다

공개 > 새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재기간중인 자료보기

고시공고 지난 자료보기

제 목

검색

전체 223건, 현재 페이지 1/10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22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공개채용 합격자 공고	재난안전과	2026-05-22	1
222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위생과	2026-05-22	3
22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발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위생과	2026-05-22	2
2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공개채용 합격자 공고	재난안전과	2026-05-22	24
219	좌4동 주민자치 프로그램(노래교실) 감사모집 공고	좌4동	2026-05-22	4
218	2026년도 국가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보건정책과	2026-05-22	4
217	25수용0065-2 선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재결4차)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일자리정책과	2026-05-21	9
216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20260520)	토지정보과	2026-05-20	7
215	우동3 재개발사업 관리저분계획인가 고시	건축과	2026-05-20	40
214	2026년 하반기 공공체육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홍보협력과	2026-05-20	364

«

<

1

2

3

4

5

6

7

8

9

10

>

»

공개 > 새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재기간중인 자료보기

고시공고 지난 자료보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공고

등록일 | 2026-05-22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711호
담당자/연락처	이수경 / 051-749-4393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1.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년 6월 10일(수) 14:00

○ 장소 : 아르피나 8층 중회의실(시결홀)(해운대해변로 35)

2. 의견진술자 추천 방법 및 기한

○ 기한 : 2026년 6월 2일(화)

○ 방법 : 첨부1의 '의견진술자 추천서' 작성 후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또는 우3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3. 자세한 사항은 첨부2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공고문(수영만 요트경기장).hwp

내려받기

[별지 제2호의2서식] 의견진술자 추천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hwp

내려받기

목록

▶ 공청회 참석자

구 분	인원(명)	비 고
주재자	1	
사업시행자	3	아이파크마리나(주)
사업자측 의견진술자	3	환경영향평가, 건축 분야
주민측 의견진술자	1	
지역주민	55	참석인명부 참조
의견수렴 주관기관	2	해운대구 환경위생과
협력사	8	교통영향평가, 해양설계 등
계	73	

▶ **공청회 참석인명부**

(1/3)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참석인명부					
계획명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설명회 일시	2026년 6월 10일 (수) 14:00	설명회 장소	아르피나 8층 중회의실		
일련번호	성명	주 소	서명	비고	
	송	[Redacted]	1		
	박				
	홍				
	최				
	정		324		
	강				
	김				
	조				
	박				
	정				
	조				
	이				
	조				

화학영향평가 규정하에 국영하에

계 획 명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설 명 회 일 시	2026년 6월 10일 (수) 14:00		설 명 회 장 소	아르피나 8층 중회의실		
일련번호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정유진					
	김민지					
	이재현					
	박지민					
	최지우					
	한지은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조지민					
	윤지민					
	김지민					
	이지민					
	박지민					
	최지민					
	한지민					
	홍지민					
	신지민			</		

3. 주민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3.1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 결과

주민의견수렴 결과,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주민의견 제출서 725부가 제출되었고,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총 707건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의 공청회 개최조건에 해당되었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 ① 사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 해운대



해운대구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의견 등 통보(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1.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규정에 따라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붙임참고) 등을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사업자는 제출된 주민 의견 등 수렴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공청회의 개최 등)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대상으로 향후 공청회 개최 시 홍보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문서 접수 처리시 비공개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주민의견 제출서 등(스캔본 일부-메일 별송)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 665부(원본등 사업자 별송)
3.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결과보고서 1부. 끝.

해운대구청장



수신자 부산광역시(도시인프라개발과장), 부산광역시(환경정책과장), 아이파크마리나(주) 귀하 (우0618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21, 4층 (대치동, 삼탄빌딩))

주무관 환경보호팀장 환경위생과장 전결 2025. 7. 18.

협조자

시행 환경위생과-28331 (2025. 7. 18.) 접수

우 4804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 3층 환경위생과 (재송동) / <http://www.haeundae.go.kr>

전화번호 051-749-4392 팩스번호 051-749-4389 / shwani02@korea.kr / 비공개(5)

일상행복도시 매력관광도시 해운대

3.2 주민의견 및 반영여부

가. 설명회

<표 3-1> 설명회시 주민의견 및 반영내용

(1/2)

구분	주요 의견내용	반영 내용
주민 1	○ 폐각류 제거, 연마, 도장 등 수리소에서 나오는 유해 오염물질에 대한 예측 필요 ○ 조경면적 증가 필요 ○ 요트클럽동 건물 높이 낮춰야 함 ○ 엑소디움에서의 사후환경조사 필요	○ 수리시설 사용예정 도료의 제작사가 제공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예측 및 건강영향 검토를 실시하였음(최종환경영향 평가서에 수록 예정) ○ 식재 면적을 추가 확보하였음 (13,556㎡ → 19,475㎡) ○ 요트클럽동은 최고높이는 23.1m(설명회 시)에서 21.6m(건축심의완료)로 조정하였고, 주민 추가요청을 반영하여 21.05m로 최종 조정하였음(4층 규모 자체도 축소) ○ 공사시 및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조사지점에 해운대엑소디움을 반영하였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주민 2	○ 오염원에 대한 상세한 예측과 고성능 저감시설 설치, 감지센서 설치, 센서 경보시 작업 중지 등 구체적 시설계획, 운영방안 필요 ○ 요트협회동 너무 크므로 축소 바람	○ 수리시설 사용예정 도료의 제작사가 제공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예측 및 건강영향 검토를 실시하였음(최종환경영향 평가서에 수록 예정) ○ 저감(방지)시설은 저감효율 및 운영안전성이 우수한 여과+흡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시설의 종류, 용량 등은 설치 전 인근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뿐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정 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토록 계획하였음 * IOT 모니터링 시스템(마리나관리운영사무소, 해운대구청) 설치 및 수리시설 외부에는 지역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경광등(내부 감지기 포함) 설치 ○ 요트협회동은 높이 16.7m에서 영화촬영소 높이 이하인 11.35m로 하향 조정하였음
주민 3, 4	○ 요트클럽동 높이가 높아 조망권, 재산권 피해 예상	○ 요트클럽동은 최고높이는 23.1m(설명회 시)에서 21.6m(건축심의완료)로 조정하였고, 주민 추가요청을 반영하여 21.05m로 최종 조정하였음(4층 규모 자체도 축소)

(2/2)

구분	주요 의견내용	반영 내용
주민 5	○ 요트클럽동 주차장이 70면으로 부족해 보이고, 타 주차장과 연계성이 떨어짐	○ 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토대로 법정기준대비 155% 수준(807대)으로 확보하였음. 또한 주차혼잡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분산 배치하였으며, 각 주차장에서 요트클럽동으로 도로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음
주민 6	○ 공사로 인해 서식지를 잃게 될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	○ 사업부지 내 길고양이는 동백섬유원지 일원에 임시 보호시설을 조성해 이주 완료하였음
주민 7	○ 요트클럽동과 상가동 높이 조정 필요 ○ 진·출입구 추가되면 심각한 교통정체 우려, 최소 3개차로 이상 확보 필요 ○ 녹지 및 조경면적 확충 필요 ○ 야간 조명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 필요	○ 요트클럽동은 최고높이는 23.1m(설명회 시)에서 21.6m(건축심의완료)로 조정하였고, 주민 추가요청을 반영하여 21.05m로 최종 조정하였음(4층 규모 자체도 축소) ○ 상업시설동은 높이 14.6m에서 13.4m로 하향 조정하였음 ○ 해운대해변로 2개 차로 및 마린시티1로 1개 차로 추가, 법정 155%의 주차대수 확보 및 사업지 주변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안 등 교통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식재 면적을 추가 확보하였음 (13,556㎡ → 19,475㎡) ○ 보행자 시선 및 상부 방향으로 계획된 조명(수목투사등)에 대하여 눈부심방지캡이 설치된 기기를 적용하였음
주민 8	○ 수리소는 주거지와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필요	○ 요트케어동 위치는 선박 진·출입 여건, 타 시설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를 계획하였음. 최적 저감시설 설치,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수리소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였음
주민 9	○ 준설공사 시 악취에 대한 검토 필요	○ 준설공사시에는 육상부에 준설토가 적치되지 않도록 하고, 밀폐형 그레브 사용, 토운선 악취방지 커버 설치 등으로 악취 확산을 방지할 계획임. 또한, 준설공사기간 악취발생 여부 파악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공사시 주변지역에 대한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주) 상세 반영내용은 최종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 예정임.

나. 주민의견 제출서

○ 의견제출 : 총 725부

▶ 주요 의견 10건

구 분	주 요 의 건	의견 수 ^{주)}	비 고
1	교통 혼잡 및 주차면 확보 대책	672	
2	녹지공간 및 조경시설 확충	671	
3	조명설치로 인한 빛번짐 해소방안	667	
4	요트케어동 위치 조정	503	
5	요트케어동 운영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366	
6	조망권, 재산권 침해대책 (요트클럽동 규모, 층수 조정)	353	
7	조망권 침해대책 (상가동 높이 제한)	339	
8	길고양이 보호대책	275	
9	해일위험 예측 필요, 요보트 진출입동선 혼재로 충돌위험 유발	195	
10	준설공사시 악취 대책	163	

주) 동의, 서명인이 있을 경우 인당 1개 의견으로 간주

<표 3-2> 주민의견 및 반영내용 (주민의견 제출서)

(1/2)

주요 의견내용	반영 내용
1. 교통혼잡 및 주차면 확보 대책	○ 해운대해변로 2개 차로 및 마린시티1로 1개 차로 추가, 법정 155%의 주차대수 확보 및 사업지 주변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안 등 교통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2. 녹지공간 및 조경시설 확충	○ 식재 면적을 추가 확보하였음 (13,556㎡ → 19,475㎡)
3. 조명설치로 인한 빛번짐 해소 방안	○ 보행자 시선 및 상부 방향으로 계획된 조명 (수목투사등)에 대하여 눈부심방지캡이 설치된 기기를 적용하였음
4. 요트케어동(수리소) 운영시 구체적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마련 필요	○ 수리시설 사용예정 도료의 제작사가 제공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예측 및 건강영향 검토를 실시하였음(최종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 예정) ○ 저감(방지)시설은 저감효율 및 운영안전성이 우수한 여과+흡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시설의 종류, 용량 등은 설치 전 인근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뿐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적정 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토록 계획하였음 * IOT 모니터링 시스템(마리나관리운영사무소, 해운대구청) 설치 및 수리시설 외부에는 지역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경광등(내부 감지기 포함) 설치
5. 요트케어동 위치 조정	○ 요트케어동 위치는 선박 진·출입 여건, 타 시설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를 계획하였음. 최적 저감시설 설치,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수리소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였음
6. 조망권, 재산권 침해대책 ○ 요트클럽동 규모, 층수 조정	○ 요트클럽동은 최고높이는 23.1m(설명회 시) 에서 21.6m(건축심의완료)로 조정하였고, 주민 추가요청을 반영하여 21.05m로 최종 조정하였음 (4층 규모 자체도 축소)
7. 조망권 침해 대책 ○ 상가동 높이 제한	○ 상업시설동은 높이 14.6m에서 13.4m로 하향 조정하였음
8. 요트경기장 내 서식하는 길고양이 보호대책	○ 사업부지 내 길고양이는 동백섬유원지 일원에 임시 보호시설을 조성해 이주 완료하였음

(2/2)

주요 의견내용	반영 내용
9. 재해(해일)위험에 대한 예측 필요, 조종 특성이 다른 모터보트와 세일링 요트의 진출입 동선을 혼재시켜 상시적 충돌 위험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됨	○ "전국 심해설계파 산출 보고서, 2019. 08., 해양수산부"에 제시된 태풍자료(59년치), 비태풍 바람자료(35년치)를 활용한 50년빈도 설계파의 수치모형실험 결과를 토대로 방파제 마루높이 계획을 수립하였고, 증고 후 월파랑 검토결과 허용월파랑 이내로 검토되었음 ○ 금회 해상계류시설 계획, 양방향 통행 설계기준에 따라 동측 항입구 폭은 최대 37m 이상 확보가 필요함 → 중앙방파제를 30m 제거하여 동측 항입구폭을 현재 12.5m에서 39m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10. 준설공사 시 악취대책 필요	○ 준설공사시에는 육상부에 준설토가 적치되지 않도록 하고, 밀폐형 그레브 사용, 토운선 악취방지 커버 설치 등으로 악취 확산을 방지할 계획임. - 또한, 준설공사기간 악취발생 여부 파악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공사시 주변지역에 대한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주) 상세 반영내용은 최종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 예정임.

▶ 기타 의견 (부산요트경기장 정상화 추진위원회)

주요 의견내용	반영 내용
▶ <대안 검토 의무 불이행> 방오도로 오염을 근본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육상계류시설 확충'이라는 핵심 환경 대안을 비교·검토 없이 원천 배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대안설정 및 평가" 작성방법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였음
▶ <운영 위험 예측의무 불이행> 수리시설(요트케어동)의 현실적 수요 및 운영 용량(Throughput) 분석 없이 기능 마비시 발생할 2차 위험 예측 누락	○ 수리시설 사용예정 도료의 제작사가 제공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바탕으로 운영시 영향을 예측하였고, 수리시설의 점검·고장 시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위험(체류선박 증가, 이용자 민원 등)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계획 또는 관리지침 수립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 <이해당사자 영향 분석의무 불이행> 사업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기존 요트체육인 들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완전 누락	○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평가항목·범위 등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음

주) 전체 의견 중 주민의견과 중복되는 의견은 제외하였음

다. 공청회

<표 3-3> 공청회 시 주민의견 및 반영내용

(1/3)

구 분	주요 의견내용	반영 내용
의견 진술자 (남○○)	○공청회에서 제안되고 협의된 주민의견이 실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회신받은 적이 없으며, 공청회가 단순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됨	○공청회 내용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절차를 통해 공개됨
	○수리시설에서 선박 따개비 제거, FRP 그라인딩, 도장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 악취, 유해물질 등은 기존 저감대책으로는 부족	○요트케어동 내 별도 전용부스 설치를 계획하였고, 가스상 및 입자상 물질의 동시 처리가 가능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여과+흡착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시설의 종류, 용량 등은 설치 전 인근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임
	○냄새 등을 잡을 수 있도록 배기가스는 태우는 공법이 필요	○처리공법은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와 특성에 따라 선정하며, 고농도의 경우 RTO 등 연소방식을 적용하기도 하나, 연소방식 적용시 연소과정에서의 오염물질 추가 발생, 가스저장 탱크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의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본 시설은 저감효율 및 운영 안전성이 우수한 여과+흡착시설을 계획하였음
	○요트클럽동 높이가 4층으로 되어 있는데, 피트층까지 치면 5층 규모로 인근 주민들이 높이 축소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요트클럽동은 4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최고높이는 23.1m(설명회 시)에서 21.6m(건축심의완료)로 조정하였고, 주민 추가요청을 반영하여 21.05m로 최종 조정하였음(4층 규모 자체도 축소)
	○부산시 및 시행사에 등기우편으로 의견을 전달했으나 회신이 없음	○법인 주소지 문제로 우편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확인 후 회신토록 하겠음
	○상업시설을 축소하고 요트경기장 명칭에 맞는 시설 설치 필요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일정 규모의 상업시설이 필요하며, 요트경기장과 관련한 요트협회동, 요트하우스, 요트케어동, 요트전시동 등을 설치할 계획임.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바다도서관 등 공공시설도 충실히 반영하였음
	○인근 마린시티에 대형 개발사업이 허가되어 착공 예정이고, 수영장과 웨딩홀이 들어섬에도 주차면이 73면에 불과해 심각한 교통문제가 예상됨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토대로 해운대해변로 등 추가 차로확보, 법정기준대비 155% 수준인 807대의 주차장 확보 및 주차정보시스템 설치 계획 등을 마련하였음
	○20개월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하기 위한 주민, 관련단체, 부산시 및 시행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필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망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왔으며, 현장에 상주하며 여러 회의 참석 및 주민대표회의 분들과 상시 소통하고 있음

(2/3)

구 분	주요 의견내용	반영 내용
주민 1	○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 등 혜택에 비해 사업자 기여가 너무 적음 ○ 이미 교통정체가 심각한데 추가 시설로 더 악화될 것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설은 준공 즉시 부산시에 기부 채납되고, 사업자는 투자비 회수를 위해 30년 운영권만 보유하는 방식임 ○ 공공시설(바다도서관), 운동시설(농구 반코트)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 교통영향평가시 도심 교통문제 한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정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부서, 심의위원 의견을 종합해서 최선의 안을 마련하였음
주민 2	○ 먼지, 총탄화수소 같은 두루뭉술한 명칭 말고 크롬 등 주민 건강과 직결된 구체적인 중금속 및 VOC 종류를 나열하고 저감시설 설치 전·후 수치 제시가 필요하며, 자동차 도장공장 수준 이상의 저감시설 설치 필요	○ 수리시설 사용예정 도료의 제작사가 제공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예측 및 건강영향 검토를 실시하였음(최종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 예정) ※ 저감시설(여과+흡착시설)은 자동차 도장공장에 주로 적용되고 있음
주민 3	○ 컨벤션홀이 사실상 예식장으로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필요 주차대수가 증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재실시 하여야 함 ○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수요를 외부 주차장을 활용하려는 방안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 계획으로 생각됨	○ 향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필요한 교통분석을 추가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교통처리대책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 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토대로 법정기준대비 155% 수준(807대)으로 확보하였음. 국제대회 등과 같은 일회성 행사시 시에서 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대책이며, 지속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가 아님

(3/3)

구 분	주요 의견	반영 내용
주민 3	① 변경실시협약 특약사항 중 부잔교 1열 존치와 관련한 잔류선박의 비산먼지, 소음, 수질오염 예측과 저감대책 내용이 없고, ② 이해당사자들과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데 약식평가절차 진행, ③ 수치모형실험 등을 통해 인근 해역의 변화가 미미하다는 결론은 있으나 필수적인 상시 준설계획이나 구조적인 보완책은 저감방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부잔교 1열 존치'는 해상공사 기간 중 일부 선박이 특이사항 발생시 기존 계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의 운영 현황을 임시로 유지하려 했던 조치임. 이는 새로운 시설의 추가나 신규 운영이 아닌 기존 현황의 일부로서, 새로운 오염원이 배출되거나 주요 예측결과 및 저감대책이 변경 또는 추가될 정도의 요소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 ○ 약식평가절차 진행은 평가서 작성 전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에서 결정되었음 ○ 운영시 유지관리 일환으로 15년차 및 30년 차에 항내 퇴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기적 준설작업을 시행할 계획임
주민 4	○ 철거공사로 인해 먼지가 날리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전에 철거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보임	○ 사업부지의 우범지대화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 철거를 시행하였으나, 공사중지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현재 안전조치 후 공사중지 중임
주민 5	○ 건물들이 오래되어 석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냥 바로 철거해도 괜찮은 사항인가?	○ 석면 해체는 관련 법에 따라 사전에 관할구청에서 신고필증을 받았으며, 전문업체를 통해 지정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음
방청객 6	○ 처리시설 관련으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고, 불안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면 좋겠음	○ 수리시설 사용예정 도료의 제작사가 제공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예측 및 건강영향 검토를 실시하였음(최종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 예정)

주) 상세 반영내용은 최종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 예정임.

<표 3-4> 공청회 시 제출된 주민의견 및 반영내용

(1/2)

주요 의견	반영 내용
1. 공청회 절차 적법성에 대한 재검토	○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사업자는 공청회 개최 관련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 시 사업지역 관할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지역 주민은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공청회 개최일(2026년 6월 10일)로부터 19일 전인 2026년 5월 22일 일간신문(한겨레) 및 지역신문(국제신문)에 각각 공고를 실시하였고, 해운대구에 협조를 요청하여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동일 내용이 공고되도록 하였음
2.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별 검토 결과를 공개	○ 공청회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는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절차에서 공개·게시함
3. 주민의견 반영여부 및 사유를 공개하고 서면 답변 제공	○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제출서 및 공청회 시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사유 등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절차에서 공개·게시함
4.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공청회 개최	○ 분야별 전문 업체, 관련 전문가 검토, 부산시와의 협의는 물론 조망권, 분진 우려 등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회의 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음
5. 주민·부산시·시행사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 운영	○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망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왔으며, 현장에 상주하며 여러 회의 참석 및 주민대표회의 분들과 상시 소통하고 있음
6. 교통영향 재분석 실시	○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시설계획, 장래 교통수요 및 주변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행하였음 ○ 평가 과정에서 사업대상지 및 주변 도로망에 대한 현황 교통조사, 장래 교통수요 예측, 교차로 운영분석 및 개선대책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분석기준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였음 ○ 그러나 향후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필요한 교통 분석을 추가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교통처리대책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2/2)

주요 의견	반영 내용
7. 요트케어동 유해물질 상세 목록 및 건강영향 평가 공개	○수리시설 사용예정 도료의 제작사가 제공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예측 및 건강영향 검토를 실시하였음 (최종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 예정)
8. 철거공사 환경관리계획 공개	○철거공사 환경관리계획은 「건축물관리법」에 의거 관할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 내 수록되어 있음
9. 조망권 보호를 위한 건축물 높이 추가 조정 검토	○요트클럽동의 최고높이는 23.1m(설명회 시)에서 21.6m (건축심의완료)로 조정하였고, 주민 추가요청을 반영하여 21.05m로 최종 조정하였음(4층 규모 자체도 축소)